

# 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2~18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2, 4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## 개정이유

- 농업인의 융자금액 증액요망 등 현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례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,
-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.

## 주요골자

- 기금관리공무원 지정(안제4조제4항)
- 융자조건중 융자한도액 상향조정(안제10조제1항)
  - 시설자금은 “1천5백만원이하”에서 “2천만원이하”로,
  - 생산운영자금은 “5백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”로 개선

##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3조

## 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,  
기금관리관은 산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정담당주사로 한다.

제10조제1항중 “1천5백만원”을 “2천만원”으로, “5백만원”을 “1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기금의운용·관리)①기금은 군수가 운용·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.</p> <p>②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③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4조(기금의운용·관리)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, 기금관리관은 산업과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농정담당주사로 한다.</u></p>
<p>제10조(융자조건 및 방법)①융자한도액은 시설자금은 <u>1천5백만원</u>이하, 생산 및 운영자금은 <u>5백만원</u>이하로 지원한다.</p> <p>②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대출금리는 금리변동율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1.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</p> <p>2. 생산 및 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</p>	<p>제10조(융자조건 및 방법)①융자한도액은 시설자금은 <u>2천만원</u>이하, 생산 및 운영자금은 <u>1천만원</u>이하로 지원한다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